

『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 서 규 의원 외 12인

2. 제안이유

○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의식 고취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 명시(안 제1조)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
- “4세대 이상 가정”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이하 “효도대상자”라 한다)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함
- “효도수당”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함

○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규정(안 제3조)

-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구미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
-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함

○ 효도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,000원을 지급함(안 제4조)

○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 규정(안 제6조)

-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
-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
-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

4. 참고사항

-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-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임

- 주요 내용은

- 조례는 총 7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구미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, 지급시기는 효도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토록 규정함
- 안 제4조 효도수당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,000원을 지급토록 함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,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,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“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됨